

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안내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12. 14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 장



1. 건명 : 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안내 공시송달
2. 근거 : 「고용보험법」 제62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상계예정금액	처분사유		
조○진	1995.12.03.	구직급여 지급결정 및 반환결정액 상계 안내	1,723,900원	구직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이 결정되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구직급여 지 급가능액과 상계하고자 함	연락 두절 및 폐문부재	■ 평택시 정암로 45 (이하생략)

4. 공고 기간 : 2023. 12. 14.부터 2023. 12. 29.까지 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복지+센터 실업급여팀 최도연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TEL : 031-646-1224, FAX : 0508-8230-0343)